

정 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4
제 2 조 (목 적).....	4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4
제 4 조 (광고방법).....	4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5
제 6 조 (일주의 금액).....	5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제 8 조 (주식의 종류).....	5
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5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5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5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7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7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8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8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8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10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10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2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13
제 18 조 (소집권자).....	13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3
제 20 조 (소집지).....	13
제 21 조 (의 장).....	13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3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14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14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4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4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4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4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 29 조 (이사의 수).....	15
제 30 조 (이사의 선임).....	15
제 31 조 (이사의 임기).....	15
제 32 조 (이사의 보선).....	15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5
제 34 조 (이사의 직무).....	15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6
제 35 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6
제 36 조 (삭제).....	16
제 37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6
제 38 조 (이사회 결의방법).....	16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17
제 39 조의 2 (위원회).....	17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7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17
제 41 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17
제 41 조의 3 (감사의 임기).....	18
제 41 조의 4 (감사의 보선).....	18
제 41 조의 5 (감사의 직무 등).....	18
제 41 조의 6 (감사록).....	18
제 41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8

제 6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연도).....	19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9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19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20
제 45 조 (이익배당).....	20
제 46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0
부 칙	21
임원퇴직금지규정	2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서흥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UHEUNG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등의 제조 및 동판매업
2. 수출입업
3. 부동산 임대업
4.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동판매업
5. 인삼제품제조 및 동판매업
6. 수탁제조업 (의약품등,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화장품, 식료품 등)
7. 원료소분업 (의약품등,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화장품, 식료품 등)
8. 기계 제조 및 동판매업
9.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
10.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11. 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
12.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제반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본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heu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사백오십만주로 한다.
2.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3. 제2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할 때와 주식배당을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가) 주주에게 그가 가진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다'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다)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5.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7. 본 회사는 제1항 '가'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와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일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2) 당해 주식의 권면액
 - 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

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주주총회 개최시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가'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나) 제10조 제1항 '가'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6. 제1항 '나'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가)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나)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가'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나) 제10조 제1항 '가'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1항 '나'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가)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나)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 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헤럴드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1.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 21 조 (의 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 29 조 (이사의 수)

1.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하거나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삭제)

제 37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1.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 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이사회 의 의사록)

1.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 (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가) ESG위원회
 - 나)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1.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의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의 4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 5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의 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가)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나)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매결산기마다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규)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정 관 변 경 내 용				
· 1973년	1월	30일	제	정
· 1979년	11월	28일	개	정
· 1980년	1월	30일	개	정
· 1980년	4월	30일	개	정
· 1981년	7월	4일	개	정
· 1982년	8월	5일	개	정
· 1982년	12월	31일	개	정
· 1983년	12월	8일	개	정
· 1984년	3월	12일	개	정
· 1985년	1월	23일	개	정
· 1987년	2월	7일	개	정
· 1987년	7월	26일	개	정
· 1989년	10월	30일	개	정
· 1990년	3월	28일	개	정
· 1996년	3월	8일	개	정
· 1997년	3월	4일	개	정
· 1998년	2월	27일	개	정
· 1999년	3월	12일	개	정
· 2001년	3월	9일	개	정
· 2004년	3월	12일	개	정
· 2006년	3월	10일	개	정
· 2008년	3월	21일	개	정
· 2011년	3월	4일	개	정
· 2012년	3월	16일	개	정
· 2012년	11월	27일	개	정
· 2013년	3월	29일	개	정
· 2014년	3월	21일	개	정
· 2017년	3월	17일	개	정
· 2019년	3월	15일	개	정
· 2021년	3월	26일	개	정
· 2022년	3월	25일	개	정
· 2025년	3월	28일	개	정
· 2026년	3월	27일	개	정

제29조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 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07.22.> 부칙 제2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액) 퇴직금은 퇴직일 전 1년 간의 월평균보수액(상여금포함)에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별표1)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 (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연수의 계산은 취임월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일의 월까지로 한다.
2.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단수로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제 4 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직 중 순직한 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및 재직 중 사망한 자.
2. 재직 중 회사에 대하여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부 칙

1. 이 규정은 198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1)

1. 이 규정은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1. 이 규정은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7)

1. 이 규정은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퇴직금지급기준배수표

직 위	근 속 연 수	지 급 배 수
회장, 부회장, 사장	1년에 대하여	3.0
부사장, 전무이사	1년에 대하여	2.0
상무이사, 이사, 이사보	1년에 대하여	1.5
상 근 감 사	1년에 대하여	2.0